

**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-43호**

「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7. 9.

경 기 도 지 사

**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전부개정(2021. 6. 9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‘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’ 구성·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로 정함(안 제명)
- 나.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정함(안 제2조)
- 다.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비용을 정함(안 제3조)
- 라.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~제9조)
- 마.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을 정함(안 제10조)

3. 자치법규안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「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(토지정보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  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[ranplay@gg.go.kr](mailto:ranplay@gg.go.kr)
  - 2)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
  - 3) 연락처: (전화) 031-8008-4943, (팩스) 031-8008-2359

경기도 조례 제 호

##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

1. 도로명: 모든 도로의 명칭
2. 도로명과 기초번호: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
3. 도로명주소: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
4.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: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·변경의 기본단위
5. 국가지점번호: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
6. 사물주소: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

제3조(광고의 비용)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무료
  - 가.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하려는 경우
  - 나.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
  - 다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유료: 제1호 외의 경우는 도지사가 별도로 산정한다.

제4조(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)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
2.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), 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터미널, 공항 등에 설치·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
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
4. 도 단위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보급
5.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.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계 공무원
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도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, 위원의 해촉, 운영 및 수당·여비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도지사는 「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제10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손해배상 공제가입 등)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)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민방위·예비군 교육, 각종 단체의 회의·행사·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경기도 도로명주소조례」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.

소관 실·국		도시주택실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토지정보과장 권경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주소정보담당 서종환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주사 조혜란(8008-4943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</b></p> <p>제1조(목적) (생 략)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, 「도로명주소대장규칙」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3조(도로명의 사용 의무)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(노선명)을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(노선명)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</b></p> 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 제〉</p> <p>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로명: 모든 도로의 명칭</li> <li>2. 도로명과 기초번호: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.)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</li> <li>3. 도로명주소: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</li> <li>4.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: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기도(이하 “도” 라한다)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·변경의 기본단위</li> <li>5. 국가지점번호 :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</li> <li>6. 사물주소 :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</li> </ol>

제4조(사업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때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도로구간의 설정 등) 도지사는 법 제8 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로부터 2 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,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·변경을 위한 신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검토하여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제3조(광고의 비용)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무료

가.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하려는 경우  
나.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
다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유료: 제1호 외의 경우는 도지사가 별도로 산정한다.

제4조(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)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

<p>제6조(도로명주소의홍보) 도지사는 부채, 저금통 등의 생활용품에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수 있다</p> <p>제7조(도로명주소의 교육지원) ① 도지사는 각종 단체의 회의·행사·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)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여객터미널,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설치</p> <p>2.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 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사용</p> <p>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</p>	<p>2.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), 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터미널, 공항 등에 설치·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</p> <p>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</p> <p>4. 도 단위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보급</p> <p>5.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--	---

- 4.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·보급
- 5.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(1)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을 도로, 문화관광, 도시계획, 지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장, 과장 등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- 1.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도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- 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- 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

제5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.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 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계 공무원
- 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도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- 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, 위원의 해촉, 운영 및 수당·여비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<삭 제>

-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2. 2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 구간의 설정·변경,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

제11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) ① 당연직  
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이 품위손상,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
<신 설>

제6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회의  
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도지사는 「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에 따른  
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
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 
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 
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14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,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관련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간사 등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원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
3.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

<삭 제>

<삭 제>

제9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<신 설>

제10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」를 따른다.

<신 설>

제11조(손해배상 공제가입 등)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2조(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)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수 있다.  
② 도지사는 민방위·예비군 교육, 각종 단체의 회의·행사·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당 및 여비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

<삭 제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